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[별지 제75호의3서식]

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

※ 아래쪽의 작성 및 처리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. (휴대)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.

이직자 (요청인)	성명	생년월일
	(휴대)전화번호 ※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	
이직사업장 (피요청인)	명칭	
	소재지	
이직일 (근로제공 마지막 날)		

「고용보험법」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사업주 귀하

작성 및 처리방법

1.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, 제출은 **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.**
2.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,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(전자우편**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** 절취하지 않고 **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** 작성하여 **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**주는 것도 가능합니다).
3.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, **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 (「고용보험법」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

<절 취 선>

사업장 확인란

이직자 (요청인)	성 명		생년월일	
	(휴대)전화번호	※ 발급요청서에 적인 경우만 적습니다.		
이직사업장 (피요청인)	명 칭			
	소 재 지			
이직사업장 접수 확인	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	년 월 일		
	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자	성명 (서명 또는 날인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이직확인서 관련 주요 용어>

- 이직일: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
- 이직사유: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이 발생한 이유
- 기준기간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되는 '이직일 이전 18개월'(법 제40조)

  * 다만,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24개월

- 피보험단위기간: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(법 제41조)

  *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에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

  * 또한, 보수지급 기초일이지만,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

☞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자로써,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가능

- 평균임금: 이직일 이전 3개월간(이직일 포함)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(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)

- 통상임금: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금액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)

- 기준보수: 사업의 폐업・도산,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보수 산정·확인이 곤란한 때,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준으로 정한 금액(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)

- 1일 소정근로시간: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(근로기준법 제2호)

- 기준기간 연장: 이직전 18개월 동안 ▲질병 ▲부상 ▲사업장 휴업 ▲임신·출산·육아 휴직 ▲기타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114호)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봄

  * 예를 들어, 이직 전 18개월간 질병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 2개월인 경우 기준기간은 18개월에 2개월을 더한 20개월이 되며,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20개월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면 됨

  **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사유: ▲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(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제외), ▲노조법에 의한 쟁의행위 ▲동거친족의 부상·질병 간호를 위한 휴직 ▲군복무를 위한 휴직 ▲사업주의 명에 의해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▲경영상 이유에 의한 무급휴직 ▲부당해고